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·제거·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,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.

II. 검토의견

1. 불필요한 의무규정 삭제 필요(안 제30조의3)

개정안 제30조의3은 “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제30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

고 있고,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‘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’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며, 개별 직업인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이 큰 경우로서 의무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적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규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, 의무사항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의무규정의 범문표현¹⁾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임.

따라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불필요한 규정인 개정안 제30조의3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<안 제30조의3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정의견
<p><u>제30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)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1)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로서 적시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임.

예: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---- 하여야 한다.

2. 그 밖의 수정사항

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함.

<자구사항 등에 대한 수정의견>

조 항	개 정 안	수 정 의 견	수정이유
제30조의2제1항제1호	1. <u>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</u> 관리	1. <u>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</u> 관리	‘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’은 현행 제28조제1항에서 약칭이 되어 있어 수정
	※ 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 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“석면해체·제거업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“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”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		
제47조의2	제47조의2(벌칙)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<u>자</u>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47조의2(벌칙)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<u>석면해체작업감리인</u> 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에는 ‘석면해체작업감리인 외의 자’에게 해당하는 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, 한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수정

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리는 주서본을 참고하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이 문 한)